

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2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‘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’ 존속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기한 연장

2. 주요내용

-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(안 제11조의 2)
 - 현행 존속기한 : 2025. 12. 31.
 - 개정 존속기한 : 2030. 12. 31.

3. 참고사항

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5. 09. 10. ~ 2025. 09. 30. (20일간)

사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
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1조의2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농업기술센터
입	농업정책과장	권 명 화
안	지역농산물유통팀장	임 아 름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강 진 영 (481-2317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11조의2(존속기한) ----- 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